

2025 국내 미술 유통업 해외진출 사업 국내 아트페어 해외개최 지원 공모 안내문

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한국 미술시장의 국제화 및 글로벌 프로모션의 기회 마련을 위해 2025 국내 미술 유통업 해외진출 사업의 일환으로 “국내 아트페어 해외개최 지원” 공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.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I 공모요강

구분	내용										
공모명	2025 국내 아트페어 해외개최 지원										
지원대상	2025년 해외에서 아트페어를 개최하고자 하는 국내 유통사 및 단체										
지원규모	건당 최대 3억원 이내 * 지원금의 30% 자부담 의무편성										
지원내용	해외에서 아트페어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원항목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원 세부내용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장소대관료</td> <td>- 아트페어 개최를 위한 장소 대관비 - 부대행사 운영을 위한 장소 대관비 * 부대행사는 특별전시, 컨퍼런스에 한함</td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현금 거래 불가 * 반드시 외화송금 또는 카드결제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간조성 용역비</td> <td>- 아트페어 및 부대행사 개최를 위한 공간조성 설치철수비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홍보비</td> <td>- 해외 온·오프라인 매체 광고비 * 도록, 배너 등의 인쇄 제작비 지원 불가 국내 매체 광고비 지원 불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지원항목	지원 세부내용	비고	장소대관료	- 아트페어 개최를 위한 장소 대관비 - 부대행사 운영을 위한 장소 대관비 * 부대행사는 특별전시, 컨퍼런스에 한함	현금 거래 불가 * 반드시 외화송금 또는 카드결제	공간조성 용역비	- 아트페어 및 부대행사 개최를 위한 공간조성 설치철수비	홍보비	- 해외 온·오프라인 매체 광고비 * 도록, 배너 등의 인쇄 제작비 지원 불가 국내 매체 광고비 지원 불가
	지원항목	지원 세부내용	비고								
	장소대관료	- 아트페어 개최를 위한 장소 대관비 - 부대행사 운영을 위한 장소 대관비 * 부대행사는 특별전시, 컨퍼런스에 한함	현금 거래 불가 * 반드시 외화송금 또는 카드결제								
공간조성 용역비	- 아트페어 및 부대행사 개최를 위한 공간조성 설치철수비										
홍보비	- 해외 온·오프라인 매체 광고비 * 도록, 배너 등의 인쇄 제작비 지원 불가 국내 매체 광고비 지원 불가										
지원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5년 5월 1일 ~ 12월 15일 내 해외에서 아트페어 개최가 확정되어 현지 작품 유통·판매가 가능한 유통사 및 단체 •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• 한국화랑의 참여비율이 80% 이상 										
사업기간	2025년 5월 1일 ~ 12월 15일										
선정방식	적격 및 지원금 심사(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)										
공모기간	2025년 2월 3일(월) ~ 2025년 3월 7일(금) 16:00(한국시간)										
심사일정	2025년 3월 예정 ※변동될수 있음										
필수 제출서류	①지원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* 행정결격 : 필수제출서류 2종 중 1건이라도 미제출시 행정결격으로 심의제외 과거 연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시 행정결격으로 심의제외										

II 공모 신청 및 심사 안내

- 1) 공모 및 접수기간 : 2025년 2월 3일(월) ~ 3월 7일(금) 16:00 (한국시간)
- 2) 접수방법 :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-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 통해 접수
 - 이메일, 우편, 방문접수 불가
 -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: e-나라도움 사용자지원실 1670-9595
 - e-나라도움 사이트 이용 시 회원가입 필수, 공인인증서 필요
- 3) 심사 및 선정
 - 심사개요

구분	내용			
심사방식	서류 및 인터뷰 심사			
심사위원	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			
심사기준	구분	심사기준	가중치	내용
	사업 실행	사업수행단체의 역량 및 실적	30%	- 아트페어 개최·운영 인력의 적절성 - 최근 3년간 해외 아트페어 개최 실적 - 최근 3년간 국내 아트페어 개최 실적
	사업 목적	사업계획의 구체성/타당성	40%	- 아트페어 기획의 우수성 및 차별성 - 국내외 참여 화랑의 구체성 및 우수성 - 현지 시장분석 및 마케팅 전략의 구체성 및 차별성 - 아트페어 개최·운영 예산계획의 적절성
	사업 성과	기대효과	30%	- 해당 아트페어의 글로벌 시장 지속 가능성 - 참여 화랑 및 작가의 글로벌 진출 및 활동 확대 가능성

- 심사일정 : 3월 중 예정
- 결과발표 :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
- 문의 :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해외진출팀
 - 유선전화 : 02.2098.2924
 - 이메일 : artfair.abroad@gokams.or.kr

III

주요사항

<p>신청자격 제외대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•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,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 •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• 동 사업으로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혹은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 • 학교(초, 중, 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(동아리) • 기금모음행사(펀드레이징) 형태를 동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• 관례적인 회원전/단체전/연례전/학위청구전 또는 학교 단위 졸업작품전 등 •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•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 • 기획재정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 2 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 • 문화체육관광부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 제7조 제4항(보조사업자 선정 기준)에 해당하는 단체 (2024.10.31.개정) • 「예술인권리보장법」 제13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-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• 성희롱·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•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• 법인·단체 또는 대표자가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•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,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,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•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(단,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)
<p>지원 불가 항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 경비 :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및 전시장 임차료,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, 공과금,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•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: 자산취득비,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화설비, 홈페이지 구축비 등 • 부대비용 : 간담회 및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 • 행사 답사비 등 준비 비용 : 교통비, 숙박비, 유류대 등 •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하며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예산 편성 • 기타 사항: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,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

의무
사항
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 2에 따른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을 충분히 숙지하고,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총 보조금(지원금)의 30% 자부담 및 증빙 필수, 자부담 예산편성항목은 보조금 지원항목과 동일함
- 심의 기준에 의거한 선정 및 교부 확정 후, 작가 및 출판작 수 등 사업의 규모가 변경될 경우 지원 결정액이 축소·조정될 수 있음
- 동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, 관련한 모든 책임은 지원 단체에게 있음
-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
 - 가.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
 - 나.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- 다.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대한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
 - 라.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
 - 마.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
-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
 - 가.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
 - 나.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
 - 다.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
 - 라.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
- 임직원 연관(직계존비속 포함)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
 - *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(‘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’관련)
 - *제13조(보조금 사용 및 제한)
 - ④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(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),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(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)와는 거래할 수 없다. 다만,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.
- e나라도움 교육(온라인-이론 1회 4시간, 오프라인-실습 2회 6시간) 수료증 제출
- 사업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실무자 대상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조치 필수
 -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
 -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이수 확인서 제출
-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해 기획자, 비평가, 작가사례비(아티스트피) 등 지급 시 문체부에서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 체결
- 미술창작대가제도 도입(22.2)에 따라 작가사례비 지급 시 참여비 및 창작사례비 구분
- 매년 ‘시각예술실태조사*(구)미술시장실태조사’응답필수
- 전시 운영 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관람객 및 인파 관리 계획 마련 필수
- 「예술인고용보험제도」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시 예술인(기획자 포함)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

※ 불이행시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18조(과태료)에 의거하여 추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

* '문화예술용역'이란?

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·실연·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, 고용·도급·업무위탁·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

- 2천만원 초과 용역 계약 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(누리장터) 이용 필수
- 선정자 대상 사전워크숍 · 성과공유회 진행 시 참석 필수
- 사업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

* 정산/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

**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 후 정산보고서 제출

*** 사업기간 종료일은 전시 운영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로 제한됨

- e나라도움 상 집행·정산·실적보고·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
- 보조금은 반드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점검·검증
- 통합 홍보물 제작 시 제작 적극 참여
- 지원 전시에서 판매된 총 실적 및 작품별 판매가격 정보(이미지 포함) 제출 필수
(제출된 정보는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 'www.k-artmarket.kr'에 게재될 수 있음)
- 사업평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시, 적극 협조
- 모든 홍보/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,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로고 삽입